

(報告)

##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9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9년 5월 28 일  
발 의 자 : 박천중의원 외 9 인

### 1. 제안이유

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한사항을 보다 명확히하고, 소위원회 활동에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함.

### 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구성시 활동기간 지정(안 제7조제5항 - 신설)
  -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본회의 의결로 기간연장 가능
-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보고서 제출등(안 제7조 제6항 - 신설)
  - 특별위원회 구성직후 활동계획서 수립, 본회의에 보고
  - 활동기한 종료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
  -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특별위원회 존속

## 성남시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남시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7조 제1항중** “의회는 특정한”을 “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”으로하고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⑤특별위원회는 구성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,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.

**제12조 제3항을**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.

## 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